

의안번호	2200720
의 퇴 인	정동만의원
회 답 일	2024.6.19.
추 계 번호	24B0924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남부권개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 2,800만원, 2029년 2,800만원 등 향후 5년간 1억 4,000만원(연평균 2,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남부권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23조)	28	28	28	28	28	140	28

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25조에 따른 남부권종합개발청의 장(이하 “남부권청장”이라 한다)은 남부권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남부권 개발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남부권 도시계획, 강·섬 발전 및 특색화 사업, 숲 정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립공원 관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환태평양 관광휴양 거점구축, 광역관광개발 등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 해양 치유단지, 갯벌 자원화 등 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이차전지·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로·항만·공항·연륙교·연도교·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남부권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남부권 인근 지역과의 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1.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12. 연차별 재원조달 대책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안 제8조 (광역기반시설설치 계획의 수립 등)	남부권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지구 내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개발지구와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항만·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하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3	안 제9조 (개발지구의 지정 등)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남해안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지구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음(제2항)	의무·재량 규정
4	안 제14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남부권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개발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지구의 지정목적 및 남부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개발지구를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남부권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6.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7.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11.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2. 개발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3.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5	안 제15조 (기초조사)	남부권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안의 입안, 제9조에 따른 개발지구의 지정, 제14조에 따른 개발계획 또는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각각 대통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음(제1항)	
		남부권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 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음(제3항)	
		제3항에 따른 토지への 출입 및 토지의 일시 사용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 규정을 준용함(제4항)	
6	안 제16조 (실시계획의 승인등)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남부권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남부권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1항)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남해안발전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조성 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	의무규정
7	안 제18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남부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남부권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제1항)	의무규정
8	안 제23조 (남부권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부권개발위원회를 둔(제1항) 남부권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제2항)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3.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개발지구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4. 남부권 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5.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남부권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남부권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투자촉진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해양자원을 활용한 휴양·레저·관광산업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남부권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남부권개발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남부권개발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7항)	재량규정
		그 밖에 남부권개발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8항)	의무규정
	안 제24조 (남부권개발사업 추진지원단 설치 등)	남부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부권개발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함(제1항)	의무규정
		지원단은 남부권개발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제23조에 따른 남부권개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제2항)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9	안 제25조 (남부권종합개발청의 설치 등)	남부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부권종합개발청(이하 “남부권청”이라 한다)을 둔(제1항) 남부권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함(제3항) 남부권청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10	안 제26조 (남부권청장의 업무)	남부권청장은 남부권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1. 남부권개발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에 따른 남부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광역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 5. 제22조에 따른 준공검사 6. 남부권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개발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개발지구 및 남부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9. 개발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남부권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1. 개발지구의 재해 및 재난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개발지구에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과 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13. 개발지구 내 토지 및 하천을 이용한 수익사업 1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남부권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1	안 제27조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남부권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 기관 소속의 공무원, 남부권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2	안 제29조 (남부권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남부권관광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남부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함(제3항)	의무규정
13	안 제32조 (입주기업의 자금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 또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용지매입비의 용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남부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함(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 또는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및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촉진지구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관광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제5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14	안 제33조 (강·섬 관광 활성화)	남부권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강·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부권 강·섬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의무규정
15	안 제34조 (휴양·치유관광산업의 진흥)	남부권청장은 남부권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양·치유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휴양·치유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의무규정
16	안 제34조의2 (문화관광산업의 진흥)	남부권청장은 남부권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른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필요한 사항 2. 「관광진흥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계획 반영에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부권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17	안 제34조의3 (해양·수산산업의 진흥)	남부권청장은 남부권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부권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8	안 제34조의4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남부권청장은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9	안 제34조의5 (스포츠산업의 진흥)	남부권청장은 남부권의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부권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0	안 제34조의6 (웰니스산업의 진흥)	남부권청장은 남부권의 웰니스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부권 웰니스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1	안 제34조의7 (미래에너지산업의 진흥)	남부권청장은 남부권의 미래에너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부권 미래에너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2	안 제34조의8 (물류산업의 진흥)	남부권청장은 남부권의 물류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부권 물류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3	안 제34조의9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남부권청장은 남부권의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부권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4	안 제34조의10 (도심항공교통 도입)	남부권청장은 남부권의 도심항공교통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부권 도심항공교통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5	안 제3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사업시행자는 남부권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26	안 제38조 (특별회계의 설치)	남부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부권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안 제39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음(제1항)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개발지구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매각대금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4. 출연금 또는 보조금 5. 차입금 6. 개발지구 내 토지 및 하천을 이용한 수익금 7. 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의무규정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음(제2항) 1. 개발지구의 지정에 따른 용지의 조성 및 매입 비용 2. 광역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3. 남부권지역에 입지할 행정기관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 매입, 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 4.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제41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남부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융자 7. 그 밖에 남부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27	안 제40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음	재량규정
28	안 제41조 (차입금)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9	안 제45조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부권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천 점용료·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1항) 남부권청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남부권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개발지구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30	안 제46조 (보조금 교부 등)	국가는 남부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음 1.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민자유치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해당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량규정
31	안 제47조 (자금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사용료, 대부료 또는 건축비 2.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3.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력기업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음(제2항)	
32	안 제48조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부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외에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국가는 낙후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또는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낙후도·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33	안 제49조 (토지·건물 등의 사용허가 등의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개발지구로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지구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34	안 제50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남부권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 개발행위 기준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35	안 제51조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남부권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습지보전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습지보호지역 개발행위 기준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36	안 제52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7	안 제59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과 남부권청장은 개발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남부권청장은 개발지구 지정의 제안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함(제2항)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규정
		남부권청장은 개발지구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현행법과 제정법 조문 비교

- 제정안과 현행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조문 중 중복되는 조문은 추계에서 제외함

[표 2] 제정안과 현행법 비교표

연번	제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1	안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종합계획의 입안)
2	안 제9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7조 (개발구역의 지정)
3	안 제14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4	안 제15조 (기초조사)	제13조 (기초조사)
5	안 제16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6	안 제18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6조 (토지등의 사용·수용)
7	안 제29조 (남부권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제32조 (부담금 등의 감면)
8	안 제32조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제27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제3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9	안 제33조 (강·섬 관광 활성화)	제28조 (해양관광산업의 진흥)
10	안 제34조의2 (문화관광산업의 진흥)	제29조(문화관광산업의 진흥) 제18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11	안 제3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3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12	안 제45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32조 (부담금 등의 감면)
13	안 제59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33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10) 및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2020)에 따라 기 추진중이거나, 추진이 예정된 사업은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표 3] 조문별 비용추계현황 및 추계 사유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현행 추진사업
1	안 제34조의9	-	-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 추진중([참고자료 5] 참조)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현행 추진사업
	(동서연결 고속화 철도 건설)		
2	안 제48조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변경)(2020)의 추진사업 - 광역도로·철도망 구축 등 - 도서지역 접근성 제고 - 지역특화 산업기반 구축(모터스포츠산업 육성) - 문화·휴양관광지대 육성
3	안 제52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 - 화원관광단지 활성화 - 진도항배후지 개발

-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10) 및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2020)에 따라 계획된 총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사업별 구체적인 내역은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4]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및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단위: 조원)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10)	총사업비 (2010~2020)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2020)	총사업비 (2020~2030)
합계	24.3	합계	20.5
세계적 해양관광·휴양지대 조성	9.9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	11.0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 육성	9.3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조성	5.2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네트워크 구축	3.7	산업 및 관광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	3.7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1.4	동서간 상생·협력벨트 조성	0.6

주: 도로, 철도, 항만(마리나 제외), 공항 등을 포함하는 기반시설사업비는 미반영
자료: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10) 및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2020).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과 동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추진중이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사항을 제외한 결과, 제정안에 따른 재정수반조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5] 조문별 비용추계현황 및 추계 사유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8조(광역기반시설 실시계획의 수립 등)	×	광역권별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소요비용은 종합계획 수립 후 구체적인 도로, 철도, 항만, 수도 또는 공항 등 설치계획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추계 곤란
2	안 제23조(남부권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유사사례 참고하여 추계
3	안 제24조(남부권개발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	조직 및 인력계획, 입지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부재하여 현시점에 합리적인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유사사례 새만금개발청 신설 시 조직 및 예산 현황 [참고자료 3] 에서 확인
	안 제25조(남부권종합개발청의 설치 등)		
	안 제26조(남부권청장의 업무)		
	안 제27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4	안 제34조(휴양·치유관광산업의 진흥)	×	남부권청장이 수상레저사업, 스포츠산업, 웰니스산업, 미래에너지산업 진흥 및 물류산업 진흥 및 도심항공교통 도입을 위해 도입할 시책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이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 규모를 현시점에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안 제34조의2(문화관광산업의 진흥)		
	안 제34조의3(해양·수산산업의 진흥)		
	안 제34조의4(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안 제34조의5(스포츠산업의 진흥)		
	안 제34조의6(웰니스산업의 진흥)		
	안 제34조의7(미래에너지산업의 진흥)		
	안 제34조의8(물류산업의 진흥)		
	안 제34조의10(도심항공교통 도입)		
5	안 제38조(특별회계의 설치)	×	현 시점에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전입, 차입금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함
	안 제39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안 제40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 부터의 전입)		
	안 제41조(차입금)		
6	안 제46조(보조금 교부 등)	×	지원대상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장기대부 규모, 항목별 자금지원 규모를 특정하기 곤란함
	안 제47조(자금지원 등)		
7	안 제49조 (토지·건물 등의 사용허가 등의 특례)	×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개발지구 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에 따른 수입 감소 분은 해당 재산의 종류, 사용료 등을 추산하기 곤란
8	안 제50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특례)	×	사업시행자가 생태·경관보존지역, 습지 보호지역 등에서 시행하게 될 개발사업 계획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안 제51조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특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남부권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23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불확정적이므로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위원회 운영비용을 추산함
 - 제정안은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사사례 분과위원회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추계함

□ 추계항목별 근거

- 위원수: 수당지급이 필요한 민간위원 수는 본회의 11인, 분과위원회 5인으로 가정
 - 본회의의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의 위원을 두도록 규정한 제정안과 유사사례(수도권정비위원회 19인 위원 중 민간위원 7인(37%)) 인원구성 현황을 참고하여 수당이 지급되는 민간위원은 11인(28명×37%)명으로 가정함
 - 분과위원회는 2개 분야로 구성하며, 위원수는 본위원회 위원의 1/2 수준(5인)으로 가정함
- 개최일수: 본위원회 평균 3회, 분과위원회 평균 6회로 가정
 - 개최일수는 유사사례 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최근 3년간 평균 개최일수를 참고
- 회의참석수당 단가: 민간위원 회의당 참석수당은 1인당 30만원을 적용함
 - 1인당 회의참석수당 20만원¹⁾, 유인물비 등 안전검토비 10만원

1) 기획재정부(2024)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함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표 6] 수도권정비위원회 회의 개최일 수: 2020~2022년

(단위: 일)

구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계
2021	5	7	12
2022	3	4	7
2023	1	5	6
평균	3	6	9

자료: 국토교통부 위원회 활동내역서(2023.5. 기준)

□ (일부추계)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제정안에 따라 남부권개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

[표 7]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위원회운영비	28	28	28	28	28	140

주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1] 남해안권 개발 관련 현행 추진사업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시 제출자료

-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2020)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시의 사업비 투자실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남해안권 발전계획 변경(2020)에 따른 최근 3년간 사업비 투자실적]

(단위: 억원)

시·도 명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비 투자실적											
					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계	국 비	지방 비	계	국 비	지방 비	계	국 비	지방 비	계	국 비	지방 비	계	국 비	지방 비
합	계(8건)	878	439	439	398	199	199	112	56	56	246	123	123	40	20	20
전남도	소 계(5건)	448	224	224	200	100	100	68	34	34	108	54	54	24	12	12
	남해안 명품 전망 공원 조성(순천)	2	1	1	2	1	1	-	-	-	-	-	-	2	1	1
	남해안 명품 전망 공원 조성(고흥)	30	15	15	30	15	15	-	-	-	28	14	14	2	1	1
	남해안 명품 전망 공원 조성(여수)	44	22	22	44	22	22	-	-	-	40	20	20	4	2	2
	섬진강 영호남 복 합형 환승공원	180	90	90	118	59	59	62	31	31	40	20	20	16	8	8
	서남해안 명품 경 관 조성(무안)	192	96	96	6	3	3	6	3	3	-	-	-	-	-	-
경남도	소 계(3건)	430	215	215	198	99	99	44	22	22	138	69	69	16	8	8
	남해안 명품 전망 공원 조성 (통영,거제,남해,고 성)	42	21	21	42	21	21	-	-	-	38	19	19	4	2	2
	남해대교 관광자원 화	190	95	95	100	50	50	38	19	19	50	25	25	12	6	6
	남도대교 건설	198	99	99	56	28	28	6	3	3	50	25	25	-	-	-

주: 부산시 실적자료는 [참고자료]에서 확인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부산시의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관련 최근 3년간의 실적은 다음과 같음²⁾

- ① 부산 거점 마리나 조성
 - (사업기간) 2008~2027년
 - (사업내용)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등 3개소 마리나 거점 조성
 - (향후계획) 실시협약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추진 등
 - (총사업비) 2,640억원
 - (최근 3년간 예산) : 663억원(민자 663억원)
- ②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 활성화
 - (사업기간) 2005~2023년
 - (사업내용) 관광단지 조성 A=3,662,486.4m²
 - (향후계획) `23. 이후 : 아쿠아월드, 친환경리조트 등 주요시설 개장
 - (총사업비) 약 6조원(공공1조2천억원, 민간 4조8천억원)
 - 공공 1조 2천억원:조성공사 9,144억원(보상 6,058억원, 공사비 등 3,086억원), 기반시설 2,445억원 등
 - (최근 3년간 예산) 없음
- ③ 부산 가덕도 종합개발
 - (사업기간) 2021년~2030년
 - (사업내용)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개발 A=5.94km²
 - (눌차, 4.47km²) 주거·상업·국제업무·관광·위락 등 신공항 배후지원 기능
 - (두문, 0.92km²) LNG병커링 연계 신재생산업단지
 - (천성, 0.52km²) 역사·문화 체험 등 휴양형 관광
 - ※ 공항배치계획 변경(해상→육상+해상)으로 개발계획 재검토 중
 - (향후계획) · `23. 下.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 확정
 - `24. 上.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부산시→산업통상자원부)
 - `24. 下. 경제자유구역 지정 완료 및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총사업비) 총사업비 2조6천억원(구상용역 결과)
 - (최근 3년간 예산) 15억원(시비)
- ④ 부산항 신항 대형수리조선단지 조성

2) 부산광역시 제출자료

- (사업기간) 2015~2028년
- (사업내용) 부지 300천㎡, 안벽 3선석, Dry Dock 1기, Floating Dock 1기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해수부 사업추진)
- (향후계획) 협상대상자 지정('23.말, 해수부), 공사착공('25.)
- (총사업비) 4,556억원(민자 100%)
- (최근 3년간 예산) 없음
- 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
 - (사업기간) 2010 ~ 2023년
 - (사업내용) 산업단지 A=1,448,772㎡ (1단계 427,479㎡, 2단계 1,051,293㎡)
 - (향후계획) '23. 12. : 산업단지 전체 준공
 - (총사업비) 4,287억원 (국비 676억원, 시비 400억원, 군비 3,211억원)
 - (최근 3년간 예산) 613억원 (국비 19억원, 시비 144억원, 군비 450억원)
- ⑥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
 - (사업기간) 2010년~2025년
 - (사업내용)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 (향후계획) 설계공모·착수('23.12) / 설계 및 건립공사('25.12)
 - (총사업비) 946억원
 - (최근 3년간 예산) : 41억원(국비 32억원, 시비 9억원)
- ⑦ 부산 센트럴베이 기반 조성(부산항 북항 항만재개발사업)
 - ▶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
 - 사업개요(2008~2027)
 - 사업위치 : 중·동구(舊 연안·국제여객부두, 중앙 1~4부두) 일원
 - 사업규모 : A=155만㎡(육지 113만㎡, 해수면 42만㎡)
 - 사업비 : 2조8,545억원(정부 3,472, BPA 22,023, 부산시 3,050)
 -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07.11.22. 해수부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 (향후계획) · '23. 下 : 1-3단계 일부(국제·연안여객부두, 1부두 일원) 준공
 - '24. 上 : 1-3단계(지하차도 및 공공콘텐츠 등) 준공 / '27. : 1-4 단계(트램) 준공
 - (최근 3년간 예산) 10,574억원(국비 1,528 시 1,491 BPA 7,555)
 - ▶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 사업개요 (2020~2030년)

- 사업위치 : 중·동구(자성대부두, 부산역·부산진역 CY, 좌천·범일동 일원)
- 사업규모 : A=228만㎡[육지 157만(항만 82, 철도 34, 배후지역 37, 원도심 4), 해상 71만]
- 총사업비 : 4조 636억원(국비 3,043억원, 민자 37,593억원)
- 사업시행자 : 부산시 컨소시엄(부산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
- (향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용역 착수(BPA, '23.下)
 -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24.上), 사업착수('24.下), 사업완료('30.)
- ⑧ 사상~녹산경전철 건설
 - ▶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 (사업기간) 2010~2026년
 - (사업내용) L=6.9Km, 정거장 7개소, 차량기지 1개소
 - (향후계획) 사업준공 및 개통(26.12.)
 - (총사업비) 6,862억원(국비 3,835억원, 시비 3,027억원)
 - (최근 3년간 예산) 2,919억원(국비 1,659억원, 시비 1,260억원)
 - ▶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 (사업기간) 2021 ~ 2029
 - (사업내용) 경전철(K-AGT) 13.47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향후계획) 기본계획 승인 및 설계('25), 공사('26~'29), 개통('30~)
 - (총사업비) 11,265억원
 - (최근 3년간 예산) 25억원(국비 25억원)

[참고자료 2]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및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비교표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구분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 배경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및 특별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발전전략과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	(사회·경제적 변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수도권 집중화, 지역 주력산업 침체 등 (정책환경 변화) 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감사원 감사, 균특법 개정에 따른 초광역개발권 개념 상실, 새정부 출범 등에 따른 계획의 변경·조정 필요
계획 기간	(기준연도) 2010년 (목표연도) 2020년	(기준연도) 2018년 (목표연도) 2030년 * 해안내륙발전법 개정('18.12), 법의 유효기간 연장
계획 범위	-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의 해안선에 연결한 35개 시·군·구(12,753km²) * 부산 10개 구·군, 전남 16개 시·군, 경남 9개 시·군	-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의 해안선에 연결한 33개 시·군·구(12,869km²) * 부산 10개 구·군, 전남 16개 시·군, 경남 7개 시·군
비전 및 목표	(비전) 새로운 경제·물류·휴양 허브의 선벨트 (목표) 동북아 5위의 경제권 진입 새로운 국토성장축 형성 2시간대 통합생활권 달성	(비전)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 (목표) 동북아 5위의 경제권 진입 새로운 국토성장축 형성 2시간대 통합생활권 달성
추진 전략	- 세계적 해양 관광·휴양지대 조성 -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 육성 -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 -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조성 - 산업 및 관광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 - 동서간 상생·협력벨트 조성
사업 구성	12개 프로젝트 47개 단위사업 166개 세부사업	7개 프로젝트 20개 단위사업 96개 세부사업
사업비	24조 2,512억원	20조 5,495억원
공간 구상		

자료: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 변경, 2020.

[참고자료 3] 안 제14조 남해안개발청 관련 유사사례

－ 새만금건설청 조직 및 인력현황

새만금건설청 제출자료

□ 새만금개발청 개청 초기 예산 현황

- ‘13년 개청 당시에는 국토부 소관으로 배정된 예비비 70억원을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하는 형태로 배정됨
 - － 개청일자가 9월임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를 4개월분으로 배정
 - －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청의 설치에 관한 비용은 새만금개발청 예산으로 편성·집행한 바 없음

[2013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

(단위: 억원)

분야	사업명	예산액
계		70
청 설치 비용		－
운영비	기본경비	16
	행정정보망 구축	28
	소계	44
사업비	투자유치지원	8
인건비		18

자료: 새만금개발청 제출자료

□ 2014년도 예산 편성 현황

- 2014년도 예산(안)은 '13.10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확정('14.1월)
 - － 동서도로 건설 사업*은 개발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우선 이관
 - － ('14)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비(45), 기본조사설계비(6)를 포함, 총 51억원

[2014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 편성(표)]

(단위: 억원)

분야	사업명	예산액
계		192
■청 설치 비용		—
■운영비	기본경비	27
	행정능률향상	1
	새만금위원회 운영	1
	소계	29
■사업비	동서도로 건설	51
	투자유치지원	25
	정책연구	8
	소계	85
■인건비		78

□ 2015년도 예산 편성 현황

- 2015년부터 「국가재정법」 상 예산 편성 체계*에 따라 예산 확보
- * (부처) 예산(안) 요구(~5.31) → (기획재정부) 편성(~9.2.) → (국회) 심의·확정(~12.2.)
 - 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국토부), ②국제관광단지 개발** (문체부) 사업 추가 이관(이후 개청 관련 재정사업 이관은 없음)
 - * (기간) '13~'18/(총사업비) 239억원/ (규모) 배수지 1개소(32천톤), 관로(4km)/ (내용) 오식도배수지 및 새만금산업단지 연결관로 구축/ (방식) 보조(국비 100%)
 - ** (기간) '13~계속/ (내용) 새만금 상설공연 지원, 생태공원 3개소(군산2, 김제1) 조성/ (방식) 보조(국비 50%)

[2015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액]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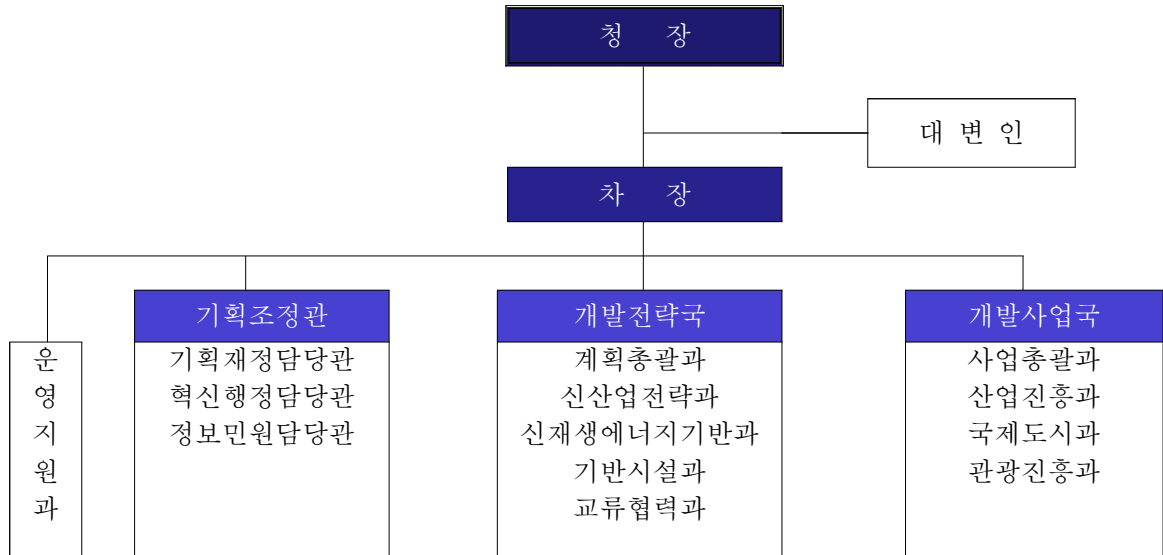
분야	사업명	예산액
계		681
청 설치 비용		-
운영비	기본경비	29
	행정능률향상	1
	행정정보망 구축	4
	새만금위원회 운영	1
	소계	35
사업비	동서도로 건설	430
	재난안전 네트워크 체계 구축	2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40
	국제관광단지 개발	16
	국가별 경험특구 기반조성	50
	투자유치지원	19
	새만금 사업 홍보	2
	정책연구	8
	소계	567
	인건비	79

[2023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액]

(단위: 억원)

분야	사업명	예산액
	계	1,484
■운영비	기본경비	40
	행정능률향상 및 위원회 운영	4.7
	행정정보망 구축	9.7
	새만금정책연구	8.3
	새만금투자유치지원	161
	소계	224
■사업비	새만금 상수도시설건설사업	169
	남북도로1단계건설	110
	남북도로2단계건설	741
	새만금문화관광활성화지원	18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36
	새만금 종합사업 관리 기술지원	8.4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시범사업	8.4
	새만금 도로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4.7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10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40
	소계	1,146
■인건비		114

□ 새만금개발청 조직도 : 1관 2국 14개과



□ 새만금개발청 정원 : 140명('23.5.1. 기준)

합계	정무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140	1	4	3	21	45	41	22	1	1	1

[참고자료 4]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총 4개 전략, 7개 프로젝트, 20개 단위사업으로 국비, 지방비, 민자 등을 포함하여 총 20조 5,495억원으로 추정

- 신규사업: 도로, 철도, 항만(마리나 제외), 공항 등을 포함하는 기반시설 사업비는 미반영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총사업비 계획]

프로젝트	단위사업	사업기간	총사업비(억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총합계			205,495	68,543	28,174	108,779
전략1. 해양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		1980~2036	110,278	13,139.5	16,805.5	80,332
남해안 특화 자원 육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남해안 테마섬 개발	2005~2024	5,212	2,007	1,118	2,017
	문화·휴양관광 지대 육성	1980~2025	10,714	1,904	3,648	5,163
	남해안 유희시설 재활용	2018~2024	7,354	571	732	6,051
	남해안 관광 이미지 구축	2020~2025	50	25	25	-
고부가 해양 관광 산업 육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2004~2031	10,380	3,030	2,693	4,657
	해양치유관광거점 조성	2017~2030	12,800	2,081	2,119	8,600
	복합휴양·관광 단지 조성	1991~2036	63,768	3,452	6,471	53,845
전략 2.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조성		2000~2034	37,282	34,331.5	2,950.5	-
고부가 해양 관광 산업 육성	지역 특화산업 기반 구축	2010~2028	9,628	2,614	4,858	2,156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	2007~2029	6,930	4,287	1,921	722
	친환경 해양산업 육성	2015~2030	8,722	2,296	415	6,011

프로젝트	단위사업	사업기간	총사업비(억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글로벌 항만·물류 거점 조성	동북아시아 물류플랫폼 구축	2020~	-	-	-	-
	해양수산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2010~2022	1,692	861	831	-
	부가가치 항만·어항 개발	2008~2030	24,628	5,626	45	18,957
전략 3. 산업 및 관광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		2000~2034	37,282	34,331.5	2,950.5	-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연계망 확충	광역 도로·철도망 구축	2000~2030	29,232	29,232	-	-
	남해안권 내부교통망 확충	2019~2034	5,588	3,353	2,235	-
내륙·해안 연계 네트워크 구축	도서지역 접근성 제고	2004~2030	-	-	-	-
	지역간 연계관광 강화	2020~2030	2,462	1,746.5	715.5	-
전략 4. 동서간 상생·협력벨트 조성		2019~2032	6,335	5,387.5	347.5	600
지역 연계발전 거점 조성	섬진강 문화권 조성	2019~2028	1,295	347.5	347.5	60
	동서 교류기반 구축	2021~2032	5,040	5,040	-	-
	남해안권 상생협력체계 강화	2020~	-	-	-	-

주: 변경계획에 신규로 반영되는 기반시설사업비(도로, 철도, 항만(마리나 제외), 공항 등) 미반영
 자료: 국토교통부 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2020.

[남해안발전개발계획 변경 세부사업 현황]

프로젝트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시도
전략 1. 해양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46개사업)			
남해안 특화자원 육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남해안 테마섬 개발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경남
		내도 생태공원 조성	경남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	경남
		삼천포 바닷길 조성	경남
		진도 테마섬 개발	전남
		사도·낭도 생태의 섬 조성	전남
		테마섬 투어 활성화 기반 조성	공동
	문화·휴양관광지대 육성	김만중 유배문학관 및 노도문학 섬 개발	경남
		통제영 거리 조성	경남
		(핵심) 해상영웅벨트 조성	전남
		울돌목관광지 조성	전남
		구 고흥군청 역사공원 조성	전남
		명상수련 웰스케어단지 조성	전남
		슬로우우드 및 산사체류단지 조성	전남
		세계 생태 테마파크 조성	전남
		고흥 우주랜드 조성	전남
		항공우주 체험파크 조성	경남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경남
	남해안 유희시설 재 활용	(핵심)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경남
		바다 위를 걷는 Sea Walk Happy Road 조성	경남
		(핵심)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경남
		(핵심) 폐교 재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경남
	남해안 관광 이미지 구축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및 홍보	공동
고부가 해양관광 산업 육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경남권 마리나 조성	경남
		서남권 마리나 조성	전남
		전남권 마리나 조성	전남
		부산 거점마리나 조성	부산
		(핵심)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경남
		(핵심) 해양레포츠 아카데미센터 건립	경남
		화이트워터파크 조성	경남
	해양치유관광거점 조성	남해안 해양치유단지 조성	공동
		솔트&머드 웰니스센터 조성	전남
		천일염 힐링 테마공원 조성	전남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	남해 해양레포츠벨트 조성	경남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경남
		남부해안 에코리조트 조성	경남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	경남
		테르앤뮤즈리조트 조성	경남
		실안관광지 조성	경남
		각산관광지 조성	경남
		화원관광단지 활성화	전남
		화양관광단지 개발	전남
		레저관광힐링 해양복합타운 조성	전남
		고흥 우주해양 리조트특구 조성	전남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 활성화	부산

프로젝트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시도
		부산 가덕도 종합개발	부산

전략 2.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조성(25개사업)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지역 특화산업 기반 구축	(핵심)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경남
		(핵심)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전남
		모터스포츠산업 육성	전남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	부산
		수소산업 육성	경남
	첨단 신소재산업 육 성	희유금속신소재산업 기반 조성	경남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	전남
		차세대 신소재산업 연관단지 구축	전남
		고분자 융복합소재 사업 구축	전남
		세라믹 클러스터 조성	전남
	친환경 해양산업 육 성	(핵심) LNG병커링 핵심기자재·클러스터 구축	경남
		부산 수리조선단지 조성	부산
		(핵심)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연구단지 조성	전남
글로벌 항만·물류 거점 조성	동북아시아 물류플 랫폼 구축	동북아 물류 R&D센터(단지) 조성	경남
		융복합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경남
	해양수산 융복합 클 러스터 구축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	부산
		진도항 배후지 개발	전남
	부가가치 항만·어 항 개발	(핵심) 부산 센트럴베이 기반 조성	부산
		광양항 재개발 및 미항조성	전남
		목포항 여객부두 시설확충	전남
		다기능 종합항 조성	공동
		물건항 다기능 어항개발	경남
		통영항 강구안 친수시설 정비	경남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	경남
		사량 진촌마을 관광명소 조성	경남

전략 3. 산업 및 관광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17개사업)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연계망 확 충	광역 도로·철도망 구축	광주~완도간 고속국도 2단계 건설	전남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경남
		남해안 철도(목포 임성~보성) 전철화	전남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전남
		목포~새만금 서해안철도 건설	전남
	남해안권 내부 교통 망 확충	거제~마산(국도 5호선) 건설	경남
		국도 3호선 확장(남해 창선~삼동)	경남
		국도 77호선(백암~상사) 도로노선 변경·개설	전남
		진도~영암간 고속도로 건설	전남
		부산 사상~녹산경전철 건설	부산
내륙·해안 연계	도시지역 접근성 제	(핵심) 연륙·연도교 단계적 확충	전남

프로젝트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시도
네트워크 구축	고	흑산공항 조기 건설	전남
	지역간 연계관광 강화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공동
		(핵심)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조성	공동
		(핵심) 섬진강 복합형휴게소 조성	전남
		(핵심)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	전남
		(핵심) 호남선 남행열차 운행	전남

전략4. 동서간 상생·협력벨트 조성(8개 사업)

지역 연계발전 거점 조성	섬진강 문화권 조성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	공동
		(핵심) 섬진철교 재생사업	경남
		고려대장경 관각지 성역화 사업	경남
		금오산 케이블카 설치	경남
	동서 교류기반 구축	동서해저터널 건설(남해~여수)	공동
		(핵심) 남도 2대교 건설	공동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공동
	남해안권 상생협력 체계 강화	남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공동

자료: 국토교통부 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2020.

[참고자료 5]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개요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³⁾

□ 사업개요



- (사업구간) 춘천~화천~양구~인제~속초 간 93.7km(정거장 6곳*)
 - * 정거장 신설 5개소(화천, 양구, 인제, 백담, 속초), 개량 1개소(춘천역)
 - ※ (설계속도) 250km/h, (운행열차) KTX-이음, (운행횟수) 용산-춘천 12회/일, 용산-속초 20회/일
- (사업기간/총사업비) `22년~`27년 / 2조 4,377억원
- (추진경위) `16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0년 기본계획 수립 → `21.1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22.6월 실시계획 승인

□ 사업효과

-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EMU(260km/h) 준고속열차가 운행됨에 따라 서울(용산)~속초간 195분→99분으로 단축(약 96분 단축)

< 서울~속초 이동 수단 및 소요시간 >

- (현재) 기차+버스(195분): 서울(용산)→춘천(ITX) 75분 + 춘천→속초(버스 120분), 승용차(약 3시간): 서울-양양 고속도로
- (개선) EMU(99분): 서울(용산)→속초(96분 단축, 환승 無)

- 접경지역인 화천, 양구, 인제군에도 최초로 철도역 신설

- (경제적 효과) 생산유발효과 2조 3,498억원, 일자리 48,890명 발생 등 지

3)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2022.10.18.

역경제 활성화, 수도권 접근성 개선을 통한 관광수요 증가 기대

－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616억원, 고용유발효과 21,042명, 취업유발 22,848명 등